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궁도 진흥법안 검 토 보 고

〈 궁도단체 및 궁도시설의 지원 등 〉
■ 박찬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01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총괄 검토	3
2. 조문별 검토	9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1조, 제2조, 제4조)	9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협조 (안 제3조, 제5조, 제6조)	11
다. 궁도의 날·궁도단체 및 궁도시설의 지원(안 제7조, 제8조)	13
라. 부칙(안 부칙)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박찬대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4. 24.
3. 회 부 일: 2025. 4.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궁도(弓道, 우리말 ‘활쏘기’)는 울산광역시 반구천 암각화에 선사시대의 활쏘기 문양 기록이 남아 있고,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狩獵圖)’, 삼국지(三國志)의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한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등 한반도에서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 무예로,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예의 범절과 심신 수련이라는 시대정신의 전통문화를 함유하고, 우리나라 무예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받아 지난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음.

아울러, 우리 민족 고유의 무형유산인 궁도를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더 나아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국제적 확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궁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의 체력과 정신건강의 증진, 상무 정신의 함양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궁도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인 궁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 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궁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궁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궁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궁도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궁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궁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30일을 궁도의 날로 정함(안 제7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궁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궁도단체와 궁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궁도시설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 궁도(弓道, 우리말 ‘활쏘기’)는 활과 화살을 사용하여 과녁을 맞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이자 심신단련을 위한 전통문화로, 오랜 역사성과 학술적 가치 등을 인정 받아 현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국가무형유산(舊 국가무형문화재)으로 지정되어 있음.¹⁾
- 또한, 궁도는 전국체육대회 등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있고, 대한궁도협회(정회원)·대한장애인궁도협회(인정단체)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입·가맹되어 있는 등 궁도는 현대 국민

1) < 전통무예 중 국가무형유산 지정 현황 >

지정명칭(지정일)	구분	전승자(명예보유자 포함)	인정일	지역
택견(1983.6.1.)	보유단체	(사)국가무형문화재 택견보존회	2013.7.17.	충북
씨름(2017.1.4.)	공동체종목*	-	-	-
활쏘기(2020.7.30.)	공동체종목*	-	-	-

*주) 공동체종목: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

자료: 국가유산청 (2025.3.1. 기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①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들의 여가 선용으로서의 스포츠로도 인정받고 있음.

○ 이러한 궁도를 미래 세대에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궁도의 체계적인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제정안은 국가의 궁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궁도단체·궁도시설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궁도의 진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무형유산인 궁도의 보존·계승·발전 및 세계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특별법으로서의 제정 실익, 유사 입법례, 법제명, 관계 부처·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정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전통무예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2008. 3. 28.)되어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전통무예단체·지도자의 육성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무예진흥법」이 이미 일반법으로 마련되어 있는데²⁾, 궁도는 「전통무예진흥법」상 국가무형유산으로

2) 2025. 8월 기준 「전통무예진흥법」상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된 전통무예는 아직 없음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된 무

서의 ‘전통무예’에 해당하므로 두 법률은 내용상 중복될 여지가 있는 등 궁도의 진흥에 관해 특별법으로 별도 규율할 실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전통무예진흥법」 과 「궁도 진흥법안」 비교]

「전통무예진흥법」	「궁도 진흥법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전통무예/ 전통무예지도자	제2조(정의) -궁도지도자/ 궁도시설/ 궁도단체/ 궁도선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제6조(협조)
-	제7조(궁도의 날)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제8조(궁도단체 및 궁도시설의 지원)
제5조의2(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제6조(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
제7조(권한의 위탁)	-

- 「씨름 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등 본 제정안과 유사한 구조를 띠며 개별 전통무예 종목에 대해 특별법을 두고 있는 입법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궁도를 비롯하여 모든 전통무예종목에 대해 개별법을 둘 경우 전통무예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³⁾⁴⁾.

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3) 참고로, 제21대 국회에 「택견 진흥법안」(의안번호 2123147, 김운덕의원 대표발의 2023. 7. 7.)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심사경과

[전통무예 관련 유사 입법례]

「씨름 진흥법」	「태권도법」	「궁도 진흥법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씨름지도자/ 씨름시설/ 씨름단체	제2조(정의) -태권도지도자/ 태권도시설/ 태권도단체	제2조(정의) -궁도지도자/ 궁도시설/ 궁도단체/ 궁도선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3조의2(대한민국의 국기)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협조)	제6조(협조)	제6조(협조)
제7조(씨름의 날)	제7조(태권도의 날)	제7조(궁도의 날)
제8조(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의 지원)	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제8조(궁도단체 및 궁도시설의 지원)
-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제18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19조(국기원)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제21조(후장사업)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24조(과태료)	-

회의	경과
문체위	2023. 7. 10. 회부 (*미상정)
본회의	2024. 5. 29. 임기만료폐기

4) < 관련 부처 의견 >

-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27)을 통해 체계적인 전통무예종목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개별 종목 진흥법을 제정할 경우 기존 「전통무예진흥법」의 형해화 및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저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임.
- 기재부는, 궁도를 포함한 전통무예 시설 및 단체 지원을 위한 「전통무예진흥법」이 이미 존재하고, 타 종목과의 형평성 및 개별 종목별 법 제정에 대한 추가 제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궁도 진흥을 위한 별도 법 제정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임.

- 한편, 국가무형유산 지정은 ‘활쏘기’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고, 「궁도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2024. 11. 25.)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궁도’라는 용어는 일본 무도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⁵⁾, 법제명에 ‘궁도’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⁶⁾

○ 참고로, 제21대 국회에도 궁도의 진흥을 위한 「궁도 진흥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⁷⁾

5) <‘궁도’ 용어의 역사>

○ 대한궁도협회 집필 「궁도90년사」(2016)에서도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활쏘기’
○ ‘국궁’은 양궁과 구별하기 위해 1969년부터 기자들이 국궁부와 양궁부란 용어 사용
○ 세조 14년(1468년), 「조선왕조실록」과 「열성어제」에 2번 우리가 먼저 사용
○ 이리에 코헤이는 1654년에 「대화류전서」에 궁도란 단어가 처음 등장, 1919년(대정 8년) 무술전문학교를 무도전문학교로 개칭하면서 기존의 궁술을 ‘궁도’로 개칭
○ 1933년 및 1934년, 「조선일보」 연재 컬럼에 ‘궁도’ 용어 사용
○ 1940년 조선체육협회에 가입한 ‘조선궁도회’

자료: 박찬대의원, (사)대한궁도협회, 「궁도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24. 11. 25.

6)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무형유산 지정명이 ‘활쏘기’로 되어 있고, 활쏘기 관련 여러 단체는 각각 지향하는 명칭에 따라 활동 중인 등 ‘궁도’ 명칭에 대한 논쟁이 우려된다는 의견임.

7) 의안번호 2126624, 박찬대의원 대표발의(2024.3.28.)

○ 심사경과

회의	경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 5. 9. 상정/소위원회부
본회의	2024. 5. 29. 임기만료폐기

[제 정 안 의 구 조]

제21대 「공도 진흥법안」	제22대 「공도 진흥법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공도지도자/ 공도시설/ 공도단체	제2조(정의) -공도지도자/ 공도시설/ 공도단체/ <u>공도선수</u>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협조)	제6조(협조)
제7조(공도의 날)	제7조(공도의 날)
제8조(공도단체 및 공도시설의 지원)	제8조(공도단체 및 공도시설의 지원)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1조·제2조·제4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인 궁도(弓道)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상무 정신의 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 명량한 기풍 진작 및 심신 수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궁도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궁도를 계승, 보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궁도시설”이란 궁도 경기·수련·연구·공연 등 궁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궁도단체”란 궁도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궁도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궁도 진흥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 제1조(목적)는 본 법률이 궁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해 보임.⁸⁾

○ 안 제2조(정의)는 ‘궁도지도자’, ‘궁도시설’, ‘궁도단체’, ‘궁도선수’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씨름 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8)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요 전통무예인 궁도의 진흥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기존 「전통무예진흥법」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입법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신중검토 의견임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궁도 진흥에 관해서는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법률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본 법률이 특별법이며 「전통무예진흥법」은 일반법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협조
(안 제3조·제5조·제6조)

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궁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궁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궁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궁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궁도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궁도 진흥의 기본방향 2. 궁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궁도의 전승을 위한 교육·보급에 관한 사항 4. 궁도지도자 및 선수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5. 궁도시설 및 궁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궁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궁도대회 및 스포츠클럽·동회인조직 등의 지원, 프로그램·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8. 궁도 국제교류·협력·보급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9. 궁도 진흥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10. 궁도시설 및 행사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궁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협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궁도 진흥 및 궁도 교육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궁도 활동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궁도 진흥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궁도 진흥의 기본 방향, 관련 조사·연구, 지도자·선수 양성, 단체·시설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궁도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궁도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안 제6조(협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실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됨.

다. 궁도의 날·궁도단체 및 궁도시설의 지원(안 제7조, 제8조)

제 정 안
제7조(궁도의 날) ① 국가는 궁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궁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30일을 궁도의 날로 정한다. ② 그 밖에 궁도의 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궁도단체 및 궁도시설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궁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궁도단체와 궁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궁도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포함한 궁도시설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 안 제7조는 매년 7월 30일을 궁도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궁도의 날에 관련 기념 행사 추진, 궁도인·단체에 대한 표창, 경기대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7월 30일’은 궁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일로서, 그 의미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 정책적 필요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⁹⁾.

9) < 관련 부처 의견 >

- 문화체육관광부는, 궁도의 날 지정의 정책적 필요성 및 해당 일자의 의미, 타 전통무예 종목 관련 기념일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검토 의견임.
- 행안부는, ‘궁도의 날’에 대한 기념일 지정은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유관단체 의견수렴 등), 기념일 지정의 적절성(「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 및 [별표2] ‘기념일의 지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기념일의 지정기준 참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나.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데 의의가 큰 날

[씨름·태권도·궁도의 날]

	씨름의 날	태권도의 날	궁도의 날(안)
날짜	음력 5월 5일	9월 4일	7월 30일
날짜의 의미	단오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정식종목 채택일 (1994. 9. 4. 제103차 총회)	국가무형유산 지정일 (舊 국가무형문화재) (2020. 7. 30.)
기념일 지정일	2012. 1. 17. 「씨름 진흥법」 제정	2006. 7. 25. WT총회(베트남 호치민)	-
근거 규정	「씨름 진흥법」 제7조	「태권도법」 제7조 (2007. 12. 21. 제정)	「궁도 진흥법안」 제7조
비고	*2017. 1. 4. 씨름 국가무형유산 지정 *2018. 11. 26 씨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남북한 공동등재)	-	-

○ 안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궁도단체·시설을 지원하고 궁도시설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궁도의 보급·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본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궁도단체·시설 지원 또는 시설 조성 시에도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지원¹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 보

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
라.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
마.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

조·지원¹¹⁾,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운영¹²⁾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라. 부칙(안 부칙)

제 정 안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0) ‘궁도’는 「전통무예진흥법」상 국가무형유산(「무형유산법」)으로서의 ‘전통무예’에 해당함.
(현재 「전통무예진흥법」상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없음)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1) 대한궁도협회(정회원)·대한장애인궁도협회(인정단체)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입·가맹되어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에 해당함.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 12) ‘궁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체육시설’에 해당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체육시설의 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종략),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안 부칙은 제정안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을
규정한 것으로, 궁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 기초 마련, 궁도단체·
궁도시설 지원을 위한 현황 파악 등 본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6개월은 적정한 기간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75